

---

#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시행 지침

---

2022. 4월



고용노동부



# 목 차

❖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개요 .....	1
I. 총칙 .....	4
1. 목적 및 적용 범위 .....	4
2. 기관·부서별 역할 .....	5
3. 추진 체계 .....	6
4. 사업 운영 .....	7
II. 지원 대상 사업주 및 요건 .....	8
1. 지원 대상 사업주 .....	8
2. 지원 제외 사업주 .....	9
3. 지원 요건 .....	10
III. 지원 내용 .....	15
1. 시설 등 임차 지원 .....	15
2. 지원 기간 .....	15
3. 지원 수준 .....	16
IV. 참여 신청, 심사 및 승인 .....	17
1. 참여 신청 .....	17
2. 사업 참여 신청서 심사 .....	19
3. 심사 시 주요 검토 사항 .....	21
4. 사업계획서 승인 .....	22
V. 사업 실시 및 지원금 지급 .....	23
1. 사업 실시 .....	23
2. 지원금 지급 신청 .....	24
3. 지원 금액 산정 등 .....	26
4. 지원금 지급 .....	27
VI. 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	29
1. 지도·점검 .....	29
2.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 .....	30
[별첨: 서식 및 관련 규정] .....	33



##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개요

○ (사업 개요)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위기산업 노·사가 합의 통해 고용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 (추진 근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21.7.22.)

○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 (지원 내용)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 임차비 지원

\* 직무전환 교육·훈련 시설 임차, 기숙사 임차, 통근버스 임차 등

- (지원 금액) 임차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지원

\* 단,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는 80%까지 지원

-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 지원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여 지급(단, 1개월 미만 미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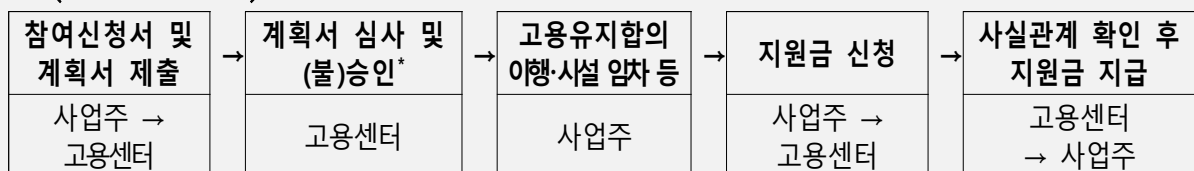
- (신청 기한) 승인 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 상 임차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내 미신청시 지원 불가

○ (지원 요건) ①고용유지에 대한 노·사 합의, ② 감원방지 의무기간(지원금 받은 기간 + 1개월), ③ 최소임차금액 300만원 이상

○ (예산) 50억원(50개소×1억원(예산 평균 지원 단가))

○ (지원 절차)



\* 사업계획서는 지방관서의 장이 (불)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심사위원회 개최

**참고**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21.7.22 관계 부처 합동)**

**1 추진배경**

- 기술·산업 혁신을 통해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충격을 받는 기업·노동자 등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VIP]산업의 변화에 취약한 기업과 노동자들을 배려하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격려사, '21.5.29>

**2 산업별 영향**

- (저탄소) 석탄발전(에너지), 자동차(수송) 등 탄소多배출 분야의 기업·노동자 및 해당 사업체가 집중된 지역에 충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디지털) 쏠 산업에 걸쳐 '얇고·넓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요와 결합하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가속화

**3 지원방안**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정부 정책지원 보강**

<b>新산업 분야</b> 혁신성장 육성·지원 전문인력 양성·공급	+	<b>기존산업(고탄소·노동집약)</b> 다각적 사업전환 지원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 지역 유망·대체산업 육성	=	<b>국가 경제</b>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정의로운 전환 실현
---	---	--	---	--

<b>저탄소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사업재편·전환 지원 + (근로자) 직무전환, 전직·재취업 지원 + (지역) 대체산업 육성, 위기지역 신속 지정</li> <li>○ (체계) 산업·지역별 일자리 모니터링 + 구조전환 가속화로 일자리 감소 전망시 노동전환 지원체계 가동</li> </ul>
-------------	--

<b>디지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통해 기술변화에 적응력 제고</li> <li>○ (근로자)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평생직업능력 향상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li> </ul>
-------------	---

**AS-IS : 사후적·개별적 대응**

**TO-BE : 선제적·종합적 대응**

<b>기업</b>	사업전환 정보 및 인센티브 부족	→	사전적 사업전환 수요발굴 → 전략적 컨설팅 + 인센티브 강화
<b>근로자</b>	준비없는 실직, 개인이 고용불안 감당	→	직무전환·재배치+사전적 이·전직 준비, 국가-기업-근로자가 공동부담·완화
<b>지역</b>	사후적으로 고용·산업 위기 대응	→	선제적 지역 대체산업 육성 지원
<b>거버넌스 전달체계</b>	범정부 종합적 지원체계 부재 사업전환-노동전환 분절적 지원	→	(중앙) 거버넌스 구축 → 범부처 협업 강화 (지역) 사업전환+노동전환 연계 전달체계 구축
<b>법·제도</b>	법률·예산·인프라 등 미흡	→	법·제도 정비 / 사회적 대화 활성화

□ 단기적 충격발생 산업(석탄화력·자동차 등) 지원방안

- ① (기업) 기활법(산업부) 및 사업전환법(중기부) 등 통해 신산업 분야로의 원활한 사업재편·전환 지원
- ② (노동자)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대폭 확대·강화 및 불가피한 이직자 전직지원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재직 중 전직준비) 등 확충
- ③ (지역) 대체산업 유치 등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위기대응

□ 중·장기적 노동전환 산업(철강·정유 등) 지원방안

- ① (공정한 산업전환) 고용안정을 고려한 산업구조 전환 전략 수립 준비
- ② (모니터링) 산업·지역별 일자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위기 징후 포착 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통해 신속 대응

□ 상시·점진적 노동전환 산업(오프라인 산업·저숙련 직종 등) 지원방안

- ① (기업) 고용친화적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중소·소상공인 재기지원
- ② (재직자) 디지털 기술 적용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충
- ③ (구직자) 상시적 직업이동에 대비한 쉰 국민 직업능력개발 지원

□ 제도적 기반 마련

- ① (예산) 부처 협업예산 편성 통해 패키지 지원 추진
- ② (법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③ (전달체계) 전담 지원기관(중진공, 대한상의)을 통해 사업전환·재편 지원 + 교육훈련·전직지원 등 통합컨설팅 제공
- ④ (인프라) 산업별 전망 및 직무분석 위한 '노동전환 분석센터' 설치

□ 사회적 대화

- 산업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노사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및 협력을 위한 사회적 논의 개시



## 1

## 목적 및 적용 범위

## 1-1 목적

- 이 지침은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절차, 각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2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① 국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3. 근로자의 실업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 4. 산업·직업·지역간 근로자의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7.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 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21.7.22. 관계부처 합동)

## 1-3 지침 시행일

- 이 지침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 한다.

## 1-4 해석 권한

- 이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



## 2

## 기관·부서별 역할

### 2-1 고용노동부 본부

- ① 시행지침의 제·개정 및 해석, 제도 개선
- ② 기타 사업 시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평가

### 2-2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 ① 사업의 안내 및 홍보
- ② 사업 참여 신청(계획), 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이송
- ③ 지원금 지급
- ④ 부정수급 조사 및 환수

### 2-3 한국고용정보원

-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통계 분석·관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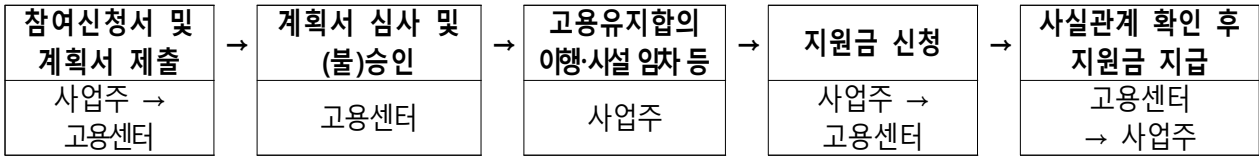
\*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전산 매뉴얼 제공

### 2-4 사업주

- ① 노·사간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합의
- ② 직무훈련 교육시설 임차, 통근버스 임차, 기숙사(월세) 등 임차
- ③ 사업 참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제출
- ④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실시, 지원금 신청 및 수령
- ⑤ 지도·점검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한 협조

### 3

### 추진 체계



① (신청서 접수) 기업지원(팀)과\*에서 참여 신청서 등을 접수하여 고용보험시스템에 입력하고 사업계획서와 노사합의 내용 등에 대한 조사 보고서 작성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주의 참여 신청서 및 지원금 신청서 등의 처리는 광주청 기업지원과에서 수행\*

\* 동 사업은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02조제3항에 따른 제주도 이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광주청 기업지원과로 이송하고 사업장 지도·점검 등 업무 협조

② (사업계획서 심사) 지방관서의 장은 검토 결과를 토대로 (불)승인 하거나 필요시 심사위원회\*에 회부

\* 심사위원회는 센터 소장, 기업지원(팀)과장,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③ (심사결과 통보) 기업지원(팀)과에서 심사 결과(승인·불승인)를 사업주에게 통보

④ (계획 이행 및 지원금 신청)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사업주는 승인 받은 내용대로 시설 임차 및 고용유지조치 등을 이행하고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⑤ (지원금 지급 결정 등) 사업주의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와 지원금 지급 요건을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 → 기후대응기금 지출관에게 지원금 지급 의뢰\*\* → 지출관 지원금 지급

\* 필요시 사업장 현장 지도·점검 실시

\*\* 지출 절차는 V-4-4. 지방관서 예산 배정 및 집행 참고

- '22년 사업 목표인 50개소가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금년도 사업이 연도 중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1

## 지원 대상 사업주

## 1-1

##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 &lt;Q&amp;A&gt;

Q1.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판단 기준

A2. 저탄소·디지털 전환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기존 제도인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을 19년 이후 승인 받은 기업과 '22년 노동전환 관련 신설 사업인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은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로 인정

Q2. 신청기업이 사업재편·전환 승인기업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방법

A2.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명단은 고용보험시스템에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확인 가능.

다만, 사업재편·전환 승인 기업 및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대상 기업 여부 확인 필요

## 1-2

##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로 심사위원회에서 승인

-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재편·전환 관련 업종(예: 자동차·화력발전 등), 스마트공장 설비 도입 등을 고려하여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가능

## 2

### 지원 제외 사업주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지원 대상 사업주라도 지원 도중 아래 사유 발생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③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④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 단체(인사혁신처장이 고시)
  -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재출자·재출연한 기관,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http://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가능
  - \*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http://www.mois.go.kr))를 통해서 확인 가능

#### 2-2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이공표 중인 사업주

-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3-1 고용유지에 대한 노·사 합의

## ○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대한 노·사 합의\*

-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lt;Q&amp;A&gt;

Q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는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 대표로 선임하여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 ○ '22.1.1. 이후 노·사 합의를 한 경우 지원

- 지원금은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

\* 예시: ('22.1.15.) 노사 합의 → ('22.1.31.)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2.2.1.) 시설 임차 → ('22.2.14.) 사업계획서 승인 → '22.2월분부터 지원

- 다만, 참여신청서 제출 이전의 임차에 대해서는 신설 사업임을 감안하여 '22년에 한해 '22.1.1.이후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소급\*하여 지원

\*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까지 지원

## &lt;Q&amp;A&gt;

Q1. "가"사가 근로자 고용유지에 '21.9.1.자로 합의한 바 있고, '22.1.15.자로 새로 고용유지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 지원 여부

A1. '22년도 신설사업이고,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따른 위기 기업 소속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고용유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22.1.1.이후 노·사 합의를 하였다면 지원

Q2 '22.1.15. 고용유지 노·사 합의하고 '22.2.1. 기숙사 임차, '22.3.15.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여부

A2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원칙임. 다만, 신설사업이고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22.2월분부터 지원

Q3 '22.2.1. 기숙사를 임차하고 '22.3.1.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하고 '22.3.15.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여부

A3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원칙임. 다만, 신설사업이고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22.2월분부터 지원

Q4 '21.9.1. 임차 계약을 하고 '22.1.15.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하고 '22.2.15.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여부

A4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이 원칙임. 예외 규정은 '22.1.1.이후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하므로 동 사례의 경우 22.3월분부터 지원

Q5 '21.3.1. 기숙사 임차를 하고 '22.3.1. 임차 계약을 연장하고 '22.3.15. 고용유지 협약 체결, '22.3.30.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여부

A5 계약 연장 등 갱신은 신규계약으로 인정하여 '22.3월분부터 지원

Q6 '22.2.1. 기숙사 임차를 하고 '22.4.15. 고용유지 협약 체결, '22.6.15.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여부

A6 '22.1.1.이후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하되 최대 3개월까지 소급이 되므로 22.4월분부터 지원 가능

○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이 표현된 경우라면 그 형식과 방법은 불문\*하나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체협약 체결, 취업규칙 개정, 근로계약 변경, 노사공동선언, 상생협정서, 노사 특별 합의, 근로자 대표 합의 등

### 3-2 감원방지 의무기간

#### ○ 지원금 받은 기간 + 1개월

- \*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등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제도화된 퇴직, 계약기간 만료, 피보험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한되지 않음

#### <예시>

- ❖ "가"사에서 '22.5.1~'22.8.31.까지 고용유지에 노사가 합의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 5월분 감원 방지 기간: 5.1~6.30
  - 6월분 감원 방지 기간: 6.1~7.31
  - 7월분 감원 방지 기간: 7.1~8.31
  - 8월분 감원 방지 기간: 8.1~9.30
- ❖ 만약 "가"사에서 '22.7.15에 소속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감원한 경우
  - 감원방지의무 기간이 도과된 5월분은 정상 지급된 지원금으로 정당 처리하고, 6~7월분 지원금은 부지급 또는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전액 부당이득(부정수급)으로 회수 조치
- ❖ 위 경우 8월분(8.1~8.31) 지원 여부
  - 부당이득의 경우 지원 제한 기간이 없으므로 8월분 지원 가능

#### ○ 감원방지기간은 이직일 기준으로 판단

- 이직일이 감원방지기간의 마지막 날일 경우 감원방지의무 준수한 것으로 판단

#### <업무 Tip>

- ❖ 이직일: 피보험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통상 근로제공 마지막 날)
  -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날
  - 정년퇴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정년으로 정해진 날
- ❖ 상실일: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날(고용보험법 제14조)



○ 감원방지 대상은 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 말일 기준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전원

-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협약 이전에 해고가 예고된 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감원방지 대상에서 제외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라 함은 “경영상 이유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의 명칭으로 근로계약 해지 청약을 받아 근로계약 해지를 공고 또는 문서로 통지한 자”를 말함

**<Q&A>**

Q. '22.3.15.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22.3.20. 구조조정을 실시한 경우 지원 여부

A. 감원방지기간 및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지원 가능.

다만, 구조조정의 사유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불승인 할 수 있음

<참고>

❖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대	중분류	세분류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 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26.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권고사직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 지원 내용



### 1

#### 시설 등 임차 지원

-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 임차 지원

\* 직무전환 교육·훈련 시설, 기숙사 임차, 통근버스 임차 등

#### <Q&A>

Q1. 직무전환 교육·훈련 시설 임차 등 지원 대상 포함 여부

A1.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위기 기업 소속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아울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복지시설 등)를 부여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하고자 함

따라서, 위 예시 이외에도 교육 및 복지 관련 시설에 대한 임차라면 지원 가능

Q2. 통근을 위한 버스 구입이 지원 대상인지 여부

A2.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한정적 예산(50억원)으로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리스 등)한 시설 등에만 지원 가능. 따라서 부지 매입, 교육 관련 컴퓨터 구입 등 사업주가 소유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함

### 2

#### 지원 기간

- 기업 당 최대 12개월 지원

- 참여 신청서 승인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주 기준 최대 12월까지 지원 가능

**<Q&A>**

Q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6개월 지원받았는데 6개월 추가 지원 가능 여부

A 한 사업장 당 최대 지원 기간은 12개월이므로 6개월 추가 지원 가능. 다른 시설 뿐만 아니라 동일 시설에 대해서도 6개월 추가 지원 가능.

다만, 추가지원 시에는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변경)승인 필요.

**3**

**지원 수준**

○ 사업주가 임차한 금액의 50%를 최대 5억원까지 지원

\* 단,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는 80%까지 지원

- 사업주가 임차한 금액은 지원기간 중 임차료 등의 합계로 계산하고 최소한 300만원 이상 시 지원

**<예시>**

❖ 사업주가 기숙사 임차료로 매월 15만원 지급하고 6개월 지원 받고자 할 경우  
⇒ 총 투자 비용이 90만원으로 지원 불가

❖ 사업주가 기숙사 임차료로 매월 15만원 + 통근버스 임차료로 매월 20만원 지급하고 12개월 지원 받고자 할 경우  
⇒ 총 투자 비용이 420만원(15만원×12개월+20만원×12개월)으로 총 210만원 지원 가능(420만원×50%)

❖ 사업주가 훈련장비 임차료로 매월 5천만원 지급하고 12개월 지원받고자 할 경우  
⇒ 총 투자 비용이 6억원으로 총 4.8억원 지원 가능(6억원×80%)

## IV

# 참여 신청, 심사 및 승인



## 1

### 참여 신청

#### 1-1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제출(사업주 → 고용센터)

-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에 수시로 제출
  - 참여신청서 등은 사업 단위로 제출
    -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도 노무 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센터 소장 전결)하는 경우 사업장 단위로 제출할 수 있음
- \* 각 사업장별로 ①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 ②인사·노무, ③회계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Q&A>

- Q 하나의 사업에 사업장별로 고용보험관리번호가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처리 방법
- A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사업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  
하나의 사업에 고용보험관리번호가 사업장별로 여러개로 분리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시스템에 관련사업장으로 해당 사업장들을 추가하면 됨  
고용보험시스템에 관련사업장으로 추가하게 되면 관련사업장으로 추가된 사업장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한번에 지원이 가능하며, 관련사업장의 감원방지의무기간 위반 여부 등도 전산으로 확인 가능함

- 사업 참여 신청서는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대상 사업주 선정을 위한 접수 마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하여 시행
  - \* (예시) '22.3.16.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관서의 장은 '22.4월 중 승인 하거나 심사위원회 개최(매월 개최하되, 필요시 격월 개최 가능)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출서류 미비사항 등을 확인하고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

## 1-2 구비 서류

- ① 사업 참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② 근로자 대표 선임서,
- ③ 노사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노사합의서 등), ④ 임차 관련 견적서 및 계약서 등 증빙 서류

## 1-3 신청서 반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반려할 수 있음
  - ①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②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나 필수내용이 누락된 경우
  - ③ 기타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1-4 조사보고서 작성

-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에서는 참여 신청 사업장을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조사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함

## 2

## 사업 참여 신청서 심사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검토 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음

### <업무 Tip>

- ❖ (불)승인 및 심사위원회 회부 전결권자: 센터 소장
- ❖ 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경우(예시)
  - ① 사업재편·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 센터 협약기업 외에 저탄소·디지털 전환 기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 ② 기숙사, 통근버스 이외에 지원 대상 시설에 대해 심사하는 경우
  - ③ 총 지원 예상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④ 기타 ①~③에 해당하지 않으나 심사위원회 회부가 필요하다고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2-1 심사위원회 구성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 참여 신청서 심사를 위하여 「노동 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 사업 참여의 심사)에 따른 심사위원회 개최 시 심사 가능

-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고용센터 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및 고용안정사업 담당(팀)과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
- 고용·노동 관련 외부전문가가 2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
- 심사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참여위원 수의 2배수 내외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개최 시 인력풀에서 위원을 지명(사업 관련 이해 관계자는 제외)

## 2-2 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장은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참여할 외부위원에게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개별 사업계획서 별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함
- 심사위원회는 회차별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 마감 후 14일 이내 개최해야 함
  -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음
- 외부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 지급 가능
  - 서면심사를 한 경우에도 심사위원이 의견서를 보내온 때에는 대면심사 수당의 50% 내외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업무 Tip>

#### ❖ 위원회 참석비(일반수용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서면 심사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 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현지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



## 2-3 심사위원회 심사 방법

- 심사위원은 참여 신청 사업별로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사업계획 심사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평가
  -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는 불승인
  - 시행지침 상 '지원제외 대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승인
- \* 시행지침 Ⅱ-2. '지원제외 사업주' 참조
- 심사위원회는 필요 시 참여 신청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을 조사할 수 있고, 신청 사업주·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3 심사 시 주요 검토 사항

- ① 지원 대상 유형
  - 사업재편 승인기업(산업부), 사업전환 승인기업(중기부),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 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재편·전환 관련 업종(예: 자동차·화력발전 관련 업종), 스마트공장 설비 도입 등을 고려하여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가능
- ② 노사합의 적정성
  - 노·사 간의 합의한 조건에 대한 이행 가능성
  - 고용유지 노사합의 이후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사 합의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 필요

### ③ 고용유지의 적정성

- 지원금 지급 기간 종료 후 고용유지 지속 가능성
- 사업계획서 접수 전 또는 고용유지에 대한 노·사 합의 전에 근로자 감원 여부

### ④ 임차의 적정성

- 통상적인 교육 및 복지 시설이라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 가능

## 4 사업 참여 신청서 승인

### 4-1 사업계획서 승인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참여 신청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 조사보고서(별지 2호 서식) 활용하여 센터소장 전결 처리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센터소장 전결)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후 있음

### 4-2 심사 결과 통지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 '사업 참여 신청서 승인(불승인)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결과를 통지해야 함

\* 전결권자 기원지원(팀) 과장

### 4-3 승인 취소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센터소장 전결)은 사업 참여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1

## 사업 실시

## 1-1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는 승인 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여야 함
-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본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지도·감독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1-2 사업계획 및 사업주 변경

- 사업주는 사업 참여 신청서 승인 통보일 이후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아야 함
- 인수·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승계받은 사업주가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센터소장 전결)은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 변경 사유를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주 변경을 승인할 수 있음
  - 변경 사유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1-3 사업 참여 신청서와 다르게 이행한 경우 지원 여부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서의 내용과 달리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변경 승인 없이 사업 참여 신청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에는 승인된 사업 참여 신청서 내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사업 참여 신청서 내용보다 임차 비용 등이 더 발생한 경우  
⇒ 사업 참여 신청서 상 임차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 사업 참여 신청서 내용보다 임차 비용 등이 덜 발생한 경우  
⇒ 실제 임차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 1-4 서류 보존

- 사업주는 동 사업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2 지원금 지급 신청

### 2-1 지원금 신청 시기

-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3개월 단위로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2-2 구비 서류

- ①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 ② 임차 비용 등 지급 내역(이체증 등)

## 2-3 서류 보완 및 반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기간, 횟수 및 신청서류 반려에 대한 처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준용

### <업무Tip>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 ① 행정기관이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된 처리완료 예정일을 말한다)부터 1이링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 3

## 지원 금액 산정 등

### 3-1 지원금 산정 기준 금액

- 지방관서의 장이 승인한 금액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3-2 지원금 산정

-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시설 등 임차한 금액의 50%
  - \* 단,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시설 임차는 최대 80%까지 지원
  - \* 원 단위 절사하고, 1개월 미만에 대해 일할 계산하지 않음
- 지원 한도는 최대 5억원

### 3-3 지원 기간 및 지급 주기

- 3개월 단위로 최대 12개월 지원

#### <Q&A>

- Q "가"사가 기숙사 임차계약을 '22.3.15.~'22.7.30. 기간 동안 체결하였을 경우 지원금 신청 시기 및 지급 방법
- A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3개월 주기로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받고 일할 계산을 하지 않음  
'22.3.15.~'22.6.14.까지, '22.6.15~'22.7.14.까지 지원 신청서를 각각 접수하여 처리  
'22.7.15~'22.7.30.까지의 기간은 1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미지원

### 3-4 신청 기한

- 승인 받은 참여 신청서 상 임차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부터 1년 이내 신청
  - 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지원

## 4

## 지원금 지급

### 4-1 지급 기한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 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급 결정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업무Tip>

##### ❖ 전결권자

-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 통지: 기업지원(팀)과장
- 지원금 지급:
  - (신청 건당 3,000만원 이상) 센터 소장,
  - (신청 건당 3,000만원 미만) 기업지원(팀)과장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완료 예정일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4-2 지급 방법

- 지원금 지급 신청서의 사업주 은행 계좌로 입금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 4-3 중복 지원 제한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정부로부터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지원 대상 시설 등에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 제한
  - 동 지원금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받는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 지원

### 4-4 지방관서 예산 배정 및 집행

-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 추이를 고려하여 수시 배정
  - \* 신설 사업임을 감안하여 고용센터에서는 필요시 예산 배정 요구 필요
    - 추후 분기별 배정 예정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활용하여 집행
  - ① 집행단위 자금 배정: 지청(고용관리과) → 사업담당(집행단위)
    - \* 통상 지청단위(고용관리과)에서 각 담당자별로 집행 단위 생성 및 자금 배정
  - ② 「내역사업 직권교부결정 및 통지」: 지청별로 담당자 1인만 수행

#### <처리절차>

- ❖ 보조사업관리 > 교부관리 > 보조사업교부관리 - 내역사업직권교부결정 및 통지  
[직권교부결정] 탭 : 목록 중 교부대상 선택 수 결정 처리
  - \* 교부 목적, 예산지출 구분, 금회 직권 교부 대상 선택 후 결정 처리
- [직권교부통보] 탭 : 직권교부결정 등록한 건을 기안, 승인 후 통보

- ③ 「지출요청」 각 담당자가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지급 결정 및 통보'한 건에 대해 지급할 금액과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고용관리과에 지출 요청

#### <처리절차>

- ❖ 보조사업관리 > 지출관리 > 지출요청관리 - 지출요청
  - \* 지출 대상, 계좌번호, 금액 등 입력 후 저장, (연계)기안하여 결재 받은 후 지출 요청





## 1

## 지도·점검

## 1-1 목적

- 지원금 지원 사업의 적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 지도, 부정수급 등 지침 위반 사항 예방 및 적발

## 1-2 수행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기업지원(팀)과

## 1-3 지도·점검 주기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 고용유지조치 등의 실시 여부, 시설 임차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함

## 1-4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시 사업 시행과 관련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 1-5 조사 등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 시 소속직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2

##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

### 2-1 근거 법령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 「공공재정환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함

\* 별첨 관련 규정 참고

### 2-2 부정이익 등 환수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환수하여야 함
- 지방관서의 장은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야 함
- 지방관서의 장은 부정청구 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함

### 2-3 제재 부가금 부과·징수

- 지방관서의 장은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함
- 지방관서의 장은 부정청구 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하는 「공공재정환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해야 함

**<업무 Tip>**

❖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공공재정 환수법 시행령 별표1)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제5조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부정이익 가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	500%
나.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	300%
다.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	200%

2.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3.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4. 행정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보다 많은 경우: 제재부가금에서 과태료등을 빼고 부과할 것

나.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과 같거나 과태료등보다 적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

5. 행정청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보다 많은 경우: 제재부가금에서 과태료등을 감경할 것

나.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과 같거나 과태료등보다 적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것





## 서식 및 관련 규정



## 서식 목록

- 【별지 제1호 서식】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 ..... 37
- 【별지 제1-1호 서식】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사업 계획서 ..... 38
- 【별지 제2호 서식】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계획 조사보고서 ..... 42
- 【별지 제3호 서식】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사업 계획서 심사표 ..... 43
- 【별지 제4호 서식】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사업참여 신청서 (불)승인 통지서 · 44
- 【별지 제5호 서식】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 46
- 【별지 제6호 서식】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지급 신청서 ..... 47
- 【별지 제7호 서식】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부)지급 결정 통지서 ..... 49









## 5. 시설 등 투자계획

1) 시설 등 임차 필요성

2) 시설 등 임차 내역

품 명	수 량	임차 예상액 (건적금액)	임차(예정)일
계			
교육 훈련 시설			
기숙사			
통근버스			

※ 임차 등 비용의 50% 한도내에서 최대 5억원, 1년간 지원

3) 재원 마련 계획

4) 중복지원 여부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정부로부터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지원 대상 시설등에 직접적으로 지원 받는 경우 지원 제한(동 지원금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받는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 지원)

## 6. 지원 필요성 및 지속 가능성

※ 해당 사업장이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기술(형식에 관계없이 기재)

※ 고용유지조치기간 이후 직무전환, 이전직 지원 등 계획 기술(형식에 관계없이 기재)

(붙임1)

### 근로자대표 선임서 (예시)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 대표로 선임하여야 함

성 명 :

생년월일 :

직 위 :

연 락 처 :

년 월 일

당사의 고용유지조치 노사합의와 관련하여 상기인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근로자 대표로 선임함에 동의합니다.

연번	성 명	서 명	연번	성 명	서 명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붙임2)

## 노 사 합 의 서 (예시)

1. 고용유지조치 노사합의 실시 사유 및 합의 방법

- 실시사유 :
- 합의방법 : 예)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변경 등

2. 고용유지 방법 (예) 직무전환, 이전직 지원 등

3. 고용유지조치 기간(지원금 신청 기간) 및 대상

(고용유지는 전(全)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4. 고용유지조치 내용

5. 고용유지조치 이후 인력활용방안

년 월 일

사업주대표 :

(서명/인)

근로자대표 :

(서명/인)



##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사업계획서 심사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업종			피보험자수	
	지원 대상 유형	[ ] 사업재편	[ ] 사업전환	지원제외업종 해당여부	[ ] 해당 [ ] 비해당
		[ ] 노동전환 고용 안정 컨설팅	[ ] 산업전환 공동 훈련센터 협약기업	중복지원 여부	[ ] 해당 [ ] 비해당
[ ] 기타( )					
심사 항목	심사내용		배점	점수	
사업 내용	<input type="checkbox"/> 노사합의와 고용유지의 적정성		20		
	<input type="checkbox"/> 임차 등 지원대상 시설의 적정성		20		
	<input type="checkbox"/> 지원금 지급기간 외 고용유지 지속 가능성 여부		20		
	<input type="checkbox"/> 지원의 필요성		20		
사업장 특성	<input type="checkbox"/> 노동전환 관련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지 등		20		
총점	100				
심사평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사업참여 신청서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2. 신청내용						
□ 지원대상 유형 ( '19년 이후 사업재편·전환 승인기업)	[ ] 사업재편 승인(산업부)		[ ] 사업전환 승인(중기부)			
	[ ]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 ] 기타( )					
□ 고용유지조치기간 * 고용유지조치기간은 지원금 지원 기간을 기재			. . . ~ . . . ( 개월)			
□ 지원대상 시설 등	[ ] 교육훈련시설 임차		[ ] 기숙사 임차			
	[ ] 통근버스 임차		[ ] 기타( )			
□ 임차 등 비용 총액 금액 * 임차 등 비용 총액의 50%, 5억원 한도로 1년간 지원	합계 원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원	원	원	원	원	원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원	원	원	원	원	원
3. 승인내용						
□ 지원대상 유형 ( '19년 이후 사업재편·전환 승인기업)	[ ] 사업재편 승인(산업부)		[ ] 사업전환 승인(중기부)			
	[ ]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 ] 기타( )					
□ 고용유지조치기간(지원금 승인 기간)			. . . ~ . . . ( 개월)			
□ 승인대상 시설 등	[ ] 교육훈련시설 임차		[ ] 기숙사 임차			
	[ ] 통근버스 임차		[ ] 기타( )			
□ 총 승인 금액 * 임차 등 비용 총액(승인금액)의 50%, 5억원 한도로 1년간 지원	합계 원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원	원	원	원	원	원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원	원	원	원	원	원
4. 불승인(일부 승인) 사유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 ] 승인, [ ] 불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 유의사항 붙임 참조



### <유의사항 안내>

가.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 이후에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사업계획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을 제출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함

다. 인수·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승계 받은 사업주가 ‘사업계획변경신청서’ 에 고용 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사업주는 이 사업 실시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마.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3개월 단위로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음

바. ★ (감원방지의무기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는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소속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함

- 감원방지 대상은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달 말일 기준 피보험자 전원

사. ★ (신청기한) 사업주는 승인 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 상 입차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동 기간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함

아. 지원금은 승인받은 입차 등 비용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12개월간 지원함

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정부로부터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지원 대상 시설 등에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이 제한됨

- 다만, 동 지원금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받는 지원금보다 많은 차액 지원

차. 동 사업은 「공공재정환수법」제13조(조사의 실시 등)에 따라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제8조(부정이익의 환수) 및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부정이익 등 환수하고 최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승인일	
담당자		전화번호	

2. 변경 요청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nput type="checkbox"/> 고용유지조치기간 (지원금 승인 기간)		
<input type="checkbox"/> 지원대상 시설		
<input type="checkbox"/> 임차 등 비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항		

3. 변경 요청 사유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사업 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반서류 각 1부. 끝.

##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b>1. 사업장 현황</b>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핸드폰번호		
<b>2. 신청 내용</b>		<input type="checkbox"/> 인위적 감원 발생 여부 <sup>①</sup> * 지원금 신청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 인위적 감원 발생한 경우 해당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에	[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중복지원 여부 <sup>②</sup>			[ ] 에	[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지원금 신청 기간 <sup>③</sup>		. . . ~ . . . ( 개월)					
<input type="checkbox"/> 시설 등 총 임차 금액 <sup>④</sup> * 지원금 신청기간 동안 임차 금액		합계					원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원	원	원	원	원	원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input type="checkbox"/> 신청 금액 <sup>⑤</sup> * 총 임차금액×50%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사업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임차비 등 지급 내역(이체증)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작성방법>

○ 감원방지의무기간(①)

-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는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소속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기간
- 감원방지 대상은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달 말일 기준 피보험자 전원

○ 중복지원 여부(②)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정부로부터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지원 대상 시설 등에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 제한됩니다.
- \* 다만, 동 지원금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받는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신청 기간(③)

-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므로 (예시) 3.15~9.14에 대한 지원금 신청은 3.15~6.14(1회차)와 6.15~9.14(2회차)로 나눠서 신청해야 합니다.

○ 시설 등 총 임차 금액(④)

- 지원금 신청 기간에 지급한 총 임차 금액을 기재합니다.

○ 신청 금액(⑤)

- 시설 등 총 임차금액(④)×50%의 금액을 기재합니다.(지원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을 한도로 기재합니다.)

■ [별지 제7호 서식]

#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 ]지급 [ ]부지급) 결정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input type="checkbox"/> 신청 기간			. . . . ~ . . . .	( 개월)
<input type="checkbox"/> 신청 금액				원
3. 지급 결정 내용				
<input type="checkbox"/> 지급 결정 기간			. . . . ~ . . . .	( 개월)
<input type="checkbox"/> 지급 결정 금액				원
3.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사업 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 ]지급 [ ]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 나. 채권(債券)
  - 다. 물품
  - 라. 상품권, 이용권(利用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표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다.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법인·단체의 기준·규정·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7. “부정이익”이란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등(정당한 권리나 자격이 인정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8. “부정수익자”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제1호가목의 기관·법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은 부정청구등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租稅)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2.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3. 벌금·과료, 몰수·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7조의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중단, 정지 또는 중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8조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제8조의 환수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을 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9조의 제재부가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본다.

④ 제12조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3조의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부정청구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5조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 제3항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가산금·체납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은 제외한다)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16조의 명단 공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제23조제1항의 포상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부정이의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등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부정이의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의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의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의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의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의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제재부가금의 부과·납부·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④ 제재부가금 부과 및 감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수회에 걸쳐 부정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누적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3.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의 기준은 부정이익등의 금액, 부정이익등을 얻은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가산금 및 체납처분)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처분을 받거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처분 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제13조(조사의 실시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서류·시설·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자료제출의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출입 등의 방법·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재산 관계 공부(公簿) 등의 열람·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처분,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제12조에 따른 가산금·체납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명단 공표) ① 행정청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부정수익자(이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한다)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

2. 제1호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이익 가액이 합계 3천만원 이상

② 행정청은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추가로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행정청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행정청은 명단 공표를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 공표의 시기·방법·절차, 소명의 기간·방법·절차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제17조(부정청구등의 신고)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18조(신고자 등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17조에 따른 신고

3. 신고 사항에 관한 조사·감사·수사 또는 소송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4. 신고한 사람에 대한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제19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기관·단체·법인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轉職),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등으로 인하여 인가·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가·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구를 한 자나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출석 요구 및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를 받거나 조회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구 또는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 결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한 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단체·법인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조치의 요구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단체·법인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⑧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전직, 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신고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2.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한 자,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③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한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등과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하여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신고자 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해당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補償金)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신고한 사람이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때 해당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한다.

1.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

2.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자, 부정수익자,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준용규정) 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등의 보호, 포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8조제4항, 제70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 “부패행위”는 “부정청구등”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제60조의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으로 본다.

## 제4장 보 칙

제24조의2(공소제기 등의 통보)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사건에 부정청구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의등을 환수하여야 할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내용은 부정이의등의 환수에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수사기관이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
2. 제17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

[본조신설 2021. 12. 7.]

제25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의등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2조에 따른 가산금·체납처분 및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이행실태의 점검 등)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의등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2조에 따른 가산금·체납처분 및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이행실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의등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2조에 따른 가산금·체납처분 및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의 이행이나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도 개선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도 개선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부정청구등의 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25조 및 제26조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 제5장 별 칙

제2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3.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회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제1호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한 행정청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8575호, 2021. 12.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제기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4. 28.>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3. 「국가재정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등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5.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지원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장학금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
7.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등

제3조(환수금액의 산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정이익 가액”이란 부정이익의 금액(금전이 아닌 금품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액
2. 법 제2조제6호나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과다하게 청구하여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뺀 공공재정지급금액
3. 법 제2조제6호다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법령·자치법규나 기준(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법인·단체의 기준·규정·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공재정지급금액
4. 법 제2조제6호라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다만, 부정수익자가 환수처분 통지 전에 부정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부정이익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제4조(환수절차) ① 행정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과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1. 환수 사유
2. 부정이익
3. 이자
4. 환수금액(부정이익과 이자의 합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납부기한
6. 납부기관
7. 납부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금액을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수금액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을 한 행정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제재부가금 부과·감면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정청구등이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부정청구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재부가금의 부과·납부절차) ① 행정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1. 부정청구등의 종류
2. 제재부가금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납부방법

② 제재부가금의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수금액”은 “제재부가금”으로,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은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으로 본다.

제7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은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과거 3년간의 누적금액으로 할 것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청구등으로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부터 과거 3년간 해당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이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의 부정청구등의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등을 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여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제8조(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제1호 본문에 따른 이자율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00분의 1을 더한 이자율. 다만, 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행정청의 조사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의를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차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해 해당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대표하는 사람
2. 법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의 신고 내용 등을 통해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10조(명단 공표)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이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라 한다)의 성명·상호·나이 및 주소(기관·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기관·법인·단체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부정청구등에 따른 부정이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3. 그 밖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해야 한다.

③ 행정청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가 부정이의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계속하여 게시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공표 대상자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명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부정이의과 그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 행정청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4. 공표 대상자가 제12조에 따라 충분한 소명을 하여 심의위원회가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행정청의 부기관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청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행정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급 이상의 공무원, 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경우 임원급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같은 호 다목의 경우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 같은 호 라목의 경우 교수 또는 수석교사]: 3명 이내

2. 법률전문가 또는 부패방지·행정·재정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5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기관·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기관·법인·단체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 속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연구·용역 등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관여했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연구·용역 등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관여했던 기관·법인·단체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 속했던 경우
- ⑦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⑨ 해당 행정청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행정청의 장이 정한다.

제12조(명단 공표 대상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행정청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5일 이상의 기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3장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13조(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보장 조치, 인가·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요구하려는 자는 그 인적사항, 요구 사유 및 요구 내용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석 요구,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일시 및 출석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 소속 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신분보장등조치의 결정)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의 소속 기관, 관계 기관 또는 소속 단체·법인 등(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분보장등조치를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신분보장등조치를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할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구인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요구한 신분보장등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조치 결과의 통보 등) ①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이 해당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전직, 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신변보호)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요구자와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요구 사유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口頭)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②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가 긴급히 필요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④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끝났거나 신변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또는 해제 사실을 요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제4장 부정청구등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제18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12. 29.>

1. 부정수익자가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을 받은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 개선에 기여한 경우

3. 신고로 인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이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이 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이 방지된 경우

4.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 (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③ 포상금의 감액 및 지급 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및 “보상대상가액”은 각각 “포상금”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부정이익등의 환수 또는 제재 부가금의 부과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이익등의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든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20조(보상금의 감액 기준)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9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여부

2.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

4. 그 밖에 부정청구등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별 감액 한도는 30퍼센트로 하며, 감액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 감액한도는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을 계획했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1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連名)으로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공직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한)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는 부정청구등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23조(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결정 등)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 또는 보상금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제24조(보상신청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① 같은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한 경우 보상대상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부정청구등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배분한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별로 감액 사유를 고려하여 그 금액을 결정한다.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보상금은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수 또는 부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환수 또는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수입 회복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액을 제2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26조(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장 보 칙

제27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방법 등) 행정청은 법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체납 처분 및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기록매체를 포함한 기록매체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1.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2. 처분일
3. 처분 대상자
4. 처분 사유
5.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의 경우 해당 금액 및 납부기한
6.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일, 공표방법
7. 그 밖에 행정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게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청 및 법 제17조 각 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무

10. 법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1. 법 제19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불이익 추정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2.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자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4. 법 제2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에 관한 사무

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31349호, 2020. 12. 31.>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